

◆ 政府 施策 ◆

규소강판 關稅 인하 추진

— 通産部, 5% 수준으로 하반기부터 施行예상 —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변압기와 모터 등의 중전기기 제품에 핵심소재로 들어가는 규소강판에 대한 수입관세가 낮아질 전망이다.

韓國電機工業振興會는 최근 변압기 등 주요 중전기기의 기초원자재인 규소강판이 변압기 생산량의 지속적인 증가등으로 공급물량이 부족하여 생산업체의 조업이 어려운 실정으로서 해외로부터의 긴급 구입이 시급한 실정이나, 아직도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중전업계로서는 수입 원자재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규소강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현행 관세율 8%를 무세화 또는 할당관세 3%이하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 한 바 있다.

이에 통상산업부는 국제적인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규소강판의 수입관세를 현행 8%에서 5%로 낮추는 방안을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이다.

규소강판에 대한 수입관세가 5%로 낮춰질 경우 톤당 1,803달러인 수입가격이 50달러 가량 내리게 된다.

국내에서 포항제철만이 생산하고 있는 규소강판의 내수규모는 올해 27만3천톤이지만 포철이 연간 생산량(22만6천톤)의 15.5%인 3만5천톤을 수출할 계획이기 때문에 중전기기 업계는 8만2천톤 정도를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

더욱이 포철은 정부가 가격인상을 억제해 수입가의 70% 수준인 톤당 1,312달러에 이 강판을 국내에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내수공급을 줄이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산부는 현재 중전기기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고려, 규소강판에 대한 관세인하를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인데 재경원이 이 문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오는 하반기부터는 수입관세가 4~5% 수준으로 낮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변압기와 모터 제조원가의 20~40% 수준을 차지하는 규소강판의 수입관세가 내리면 국내 중전기기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돼 올해 15억8,7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중전기기 부문의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통산부는 포철측에 규소강판의 내수공급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試製品개발자금 대상 8월말 확정

— 資本財산업육성추진案, 세부계획 마련키로 —

정부는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 제1회 자본재산업육성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추진전략별 소관부서와 추진일정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통상산업부 장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의 '자본재산업육성추진위원회'를 매 분기마다 개최키로 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책에 포함된 5대 전략을 40개 세부과제로 나뉘 소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 관리해 나가되 통산부를 축으로 6월까지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또 對日수입 3천만달러 이상의 품목, 엔고에 따른 10대 유망업종의 품목,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큰 품목 등을 대상으로 26개 품목별 담당관을 지정해 시제품 개발자금 지원대상 전략 품목을 선정키로 했다.

5천만달러 이상 시설재 및 원·부자재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기업별 담당관제를 운영하며 수요 대기업이 중소 생산업체와 공동개발 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 전략 품목을 선정해 중소기업의 국산화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 공업발전기금의 시제품 개발자금 지원규모를 12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리고 8월 말까지 시제품 개발자금 지원대상 전략품목을 확정키로 했다.

또한 신규 개발된 기계류에 대한 품질인증을 위해 공업기술원 내에 품질인증센터를 설치하되 기업의 수요가 많은 자동화기계에 대한 품질인증을 위해 자동화설비센터도 설치키로 했다.

자본재산업과 관련된 창업, 기술, 경영, 판로, 정보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종합지원을 위해 설립하는 '자본재산업종합지원센터'는 자본재 생산기업이 밀집한 창원지역에 우선 설립토록 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지도단에 대해서는 기업의 설계에서 부터 생산까지 일괄적인 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외화표시 국산기계구입자금은 재정경제원이 올해 1조원 규모의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자금을 조성하고 통산부와 협의해 운용요령을 확정하는 등 관계부처간 협이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 협의를 완료해 구체적인 지원방식을 확정키로 했다.

中企관련法 시행령 制 · 改正案 7月 시행

— 中企범위 조정, 固有업종 해제등 포함 —

오는 7월부터 기계류 · 부품 · 소재업종과 향만하역업 등의 물류지원업종, 소프트웨어 관련업 등 지식집약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의복, 신발, 가발업은 축소된다. 또한, 대부분의 업종등이 97년부터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제된다.

또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불공정하게 운영하는 조합의 소관물품은 구매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4개 중소기업관계법시행령 제 · 개정안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제 · 개정되는 시행령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개정), 중소기업구매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시행령(제정),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및 기업간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제정)등이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은 각종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조정, 정책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49개 업종은 범위를 넓히고 자동화와 고임금 등으로 종업원이 줄거나 앞으로 사업확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91개 업종은 축소했다. 또 섬유제조업(300억원이 내에서 500억원이내로)을 비롯한 30개 업종에 대해 자산총액 중소기업의 범위를 상향 조정했다.

중소기업의 범위는 지난 92년 7월 조정된 이후 3년만에 손대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포함되면 금융, 세제 등에서 우대받는 장점이 있는데 이번 조정에서 탈락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 기간에는 중소기업으로 계속 인정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은 새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지정 고시하는 한편 고유업종의 해제시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가방 · 핸드백 등 대부분의 잠화류제조업을 비롯, 고유업종의 절반 가량이 97년부터 고유업종에서 해제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은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불공정하게 운용하는 조합에 대해 관리대상조합으로 지정, 3개월간 관리하고 해당조합의 소관물품을 구매대상 물품에서 제외토록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자 범위 변경 내용

○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범위(전기관련 업종)

표준산업분류	해 당 업 종	상시근로자수	
		현 행	개 정 안
29226	용접기 제조업	300 (※1,000)	300
3110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300 (※1,000)	600
31102	변압기 제조업	500 (※1,000)	500
31103	전자변성기 제조업	300 (※1,000)	300
31104	방전관용 안정기 제조업	500 (※1,000)	300
31109	달리분류되지 않은 전동기·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00 (※1,000)	400
31201	배전용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300 (※1,000)	300
31202	기기용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500 (※1,000)	500
31203	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제조업	300 (※1,000)	300
31301	피복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300 (※1,000)	500
31302	가공 절연코드 및 코드셋트 제조업	500 (※1,000)	300
31401	일차전지 제조업	300 (※1,000)	300
31302	축전지 제조업	300 (※1,000)	700
31501	전구 제조업	500 (※1,000)	600
31502	조명장치 제조업	300 (※1,000)	300
31503	광고용 램프 및 유사 조명장치 제조업	300 (※1,000)	300
31901	내연기관용 전장품 제조업	300 (※1,000)	500
31902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300 (※1,000)	300

표준산업분류	해 당 업 종	상시근로자수	
		현 행	개 정 안
31903	자석 및 자석제품 제조업	300 (※1,000)	300
31904	차량용 조명 및 전기장치 제조업	300 (※1,000)	500
31905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체 제조업	300 (※1,000)	300
31906	산업용 접시세척기 제조업	300 (※1,000)	300
319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300 (※1,000)	300

※ 동 업종중 전자부품 및 전자재료류를 제조하는 업종
 ○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범위(전기관련 업종)

표준산업분류	해 당 업 종	자산총액 규모(억원)	
		현 행	개 정 안
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400~500	800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현황

분 야	업 종	해제일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전기공업분야	○ 리크로우저(27KV, 560A이상 10KV급에 한한다)제조업 ○ 컷아웃스위치(25KV급에 한한다) 제조업 ○ 고장구간 자동개폐기(25.8KV, 400A, 15KV급에 한한다)제조업	1997. 1. 1	31201
			31202
			31201
			31201
			31202

수입예정신고제 全品目 확대

- 정부, 수출입통관 先進化 多角 강구 -

정부는 수입예정신고제를 전품목으로 확대하는 한편 업계의 이용이 매우 부진한 일괄수출신고제는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재정경제원·관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수출입통관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이다.

정부는 우선 수입화물의 물류를 신속하게 하여 기업의 物流費 부담을 덜어주고 항만의 체화현상을 막기위해 입항즉시 반출체제를 갖추는 것이 긴요한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한 각종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올 7월부터 도입될 수입무문의 EDI(전자자료교환)방식에 의한 무역자동화를 위해서도 수입통관제도 개선이 긴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 수입예정신고제도를 전품목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수입예정신고제란 수입화물을 지정(보세)장치장에 장치한 후에 만 수입신고를 허용하는 대신 물품이 입항하기 전(최장 5일)에 예정신고를 허용, 세관이 통관심사를 하고 통관검사 실시여부를 결정도록 함으로써 하역과 동시에 통관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이같은 수입예정신고제는 현재 제조업체의 수출용 원재료, 생산재, 정부조달물품, 공공기관 수입물품, 지정세관등록업체의 수입물품 등에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정부는 수입예정신고제가 통관신속화에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 모든 수입품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병행해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입면허후 납세허용(사후납부제)을 보다 활성화 한다는 방침아래 이용대상업체를 대폭 확대하거나 일정기간 수입관세를 사후 한꺼번에 내도록 하는 일괄사후납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정부는 작년 1월부터 수출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해 제조전 수출신고제와 동시에 도입된 일괄수출신고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일괄수출신고제는 수출신고(면허)전에 선적을 허용한 후 수출면허를 받도록 한 제도이나 다시 수출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때문에 업계의 이용이 전체 수출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관당국은 이에 따라 일괄수출신고제를 아예 폐지하고 선적전 수출신고제를 활성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연구개발용품 關稅減免대상 확대 - 41개 삭제 · 60개 추가 ... 총 260개로 -

산업기술연구개발용 관세감면 대상품목이 재조정된다.

현재 산업기술연구개발용으로 수입되는 물품중 관세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품목은 241개이나 260개로 19개 품목이 확대된다.

財政經濟院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들의 기술·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산업기술연구개발용 관세감면대상물품 告示를 올 6월초 개정, 시행키로 했다.

이번 품목조정에는 기존의 241개 감면대상품목중 41개가 삭제되고 84개는 대상품목의 세부규격이 바뀌게 되는 반면 새로 60개 품목이 추가된다.

기존 대상품목중 이번에 제외되는 품목은 △국산화에 따라 국내생산이 가능해진 발효기·통신 신호시험기 등 △기업의 도입실적이 없는 포도당분석기·유전자합성기 등이다.

또 새로 지정되는 품목은 자동가압가열로, 하중측정기, 재봉기, 광계이블스트리핑기, 압착기, 압착탈수기 등 중소기업의 이용이 많거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에 따라 국내기술개발이 긴요한 산업에 소요되는 품목들이다.

재경원은 그러나 이번 조정에 따라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규격이 바뀐 품목이라 할 지라도 오는 8월 31일까지 수입신고가 이뤄지는 건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산업기술연구개발용 관세감면 혜택은 기업부설연구소 2004개소, 산업기술연구조합 263개 조합 등 모두 2267개 업체가 누리고 있다.

또 관세감면율은 8%로 수입관세율이 8%인 품목을 수입할 경우 1.6%의 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 한해 동안 산업기술연구개발 관세감면제도에 따라 기업들이 면제받은 관세액은 272억원이 있으며 금년도 수혜액은 308억원에 달할 것으로 財經院은 추정하고 있다.

한편 財經院은 이번 산업기술관세감면대상물품을 조정한데 이어 환경오염방지분야 감면대상물품(감면율 50%)도 조정해 6월 하순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첨단·방위산업(30%) 및 공장자동화물품(40%)에 대한 관세감면대상물품을 조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